

(붙임 1)

## 「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

### I 개정 필요성

- 중소기업 지원자금(C2) 일반지원부문의 지원비율 제고를 위하여 혁신기업(A3)의 지원 대상을 조정
- 또한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관련 법 개정을 반영

### II 주요 개정내용

- [혁신기업(A3) 지원대상 조정] 혁신기업(A3) 중 금융기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을 지원대상에서 제외
  - 금번 개정 이후 현행 지원대상 중 일부 업종은 「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(A7)」 및 「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(A8)」 등으로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이 지속
- [소재·부품 생산기업(A11) 지원대상 확대]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개정을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확대
  - 산업을 소재, 부품에서 소재, 부품, 장비로 변경하고, 대상 기업을 전문기업, 신뢰성인증마크 획득 기업과 더불어 특화선도기업, 강소기업, 창업기업 등으로 확대

### III 시행일

- 2022. 11.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(2023.1월 한도배정)부터 적용

□ 경과조치

-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취급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당행 지원종료일 까지 종전 기준에 의해 취급된 것으로 봄